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희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239
------------	-------

발의연월일 : 2019. 1. 17.

발의자 : 전희경 · 김승희 · 윤종필  
임이자 · 박덕흠 · 박맹우  
김학용 · 정태옥 · 민경숙  
신보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가 유아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학령인구에 대한 전망과 예측이 중요하나 교육부 차원에서의 정확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교원수급, 학교건설 등 다양한 교육정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차원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정책 수요의 정확성과 예산 수립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육통계조사 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자료 수집을 명시하며, 교육부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유아교육정책이 보다 정확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6조의2).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 중 “유아교육에”를 “학령인구 추이 등 유아교육에”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기초자료 수집을”을 “기초자료 및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자료 수집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까지에서”를 “제9항까지에서”로 한다.

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로 수집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자료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① ~ ③ (생 략)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u>유아교육에</u>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 ⑧ (생 략)	제3조의2(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학령인구 추이</u> <u>등 유아교육에</u> ----- ----- -----.
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유아교육 연구에 필요한 원생·교원·직원·유치원·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① -- ----- ----- ----- ----- <u>기초자료 및 학령인구 추이에</u> <u>대한 자료 수집을</u> ----- ----- -----.
② ~ ⑦ (생 략) <u>&lt;신 설&gt;</u>	② ~ ⑦ (현행과 같음) <u>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로 수집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자료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u>
⑧ (생 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p>⑨ 제1항부터 <u>제8항까지</u>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 사의 조사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p>	<p>⑩ ----- <u>제9항까지</u>에서 -- ----- ----- ----- -----. -----.</p>
---	--